

# 혼인평등의 여정에 함께 할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모두의 결혼

사람이 이길 때까지



rainbow  
action

혼인평등연대

## 02. 혼인평등, 함께 하면 이를 수 있어요

질문 1 : 혼인평등은 무엇인가요

질문 2 : 왜 혼인평등을 요구하나요

질문 3 :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 10. 혼인평등을 바라는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욕구

질문 4 : 혼인평등은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질문 5 : 결혼을 안하는 사람에게 혼인평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6 :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제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20. 혼인평등을 바라는 퀴어들의 이야기

질문 7 :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질문 8 : 혼인평등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9 : 개별 법률의 개정으로 동성부부의 제도적 차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 29. 혐오를 퍼뜨리는 이들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0 : 앞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34. [서명 캠페인]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혼인평등법, 함께 만들어요

35. [부록1] 세계 동성혼 법제화 지도

36. [부록2] 국제사회 권고, UN의 입장

37. [부록3] 혼인평등 운동의 역사

## 혼인평등, 함께 하면 이룰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혼인평등 안내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만났으니 마침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여정을 안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혼인평등을 이루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짧은 안내서입니다. 앞으로 혼인평등 안내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혼인평등 안내서는,

### 투쟁과 설득의 언어를 제공합니다.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그동안 저희의 혼인평등 운동 경험과 연구결과에 기반했지만 모든 상황에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내서를 투쟁과 설득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해주세요.

### 우리 운동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혼인평등을 둘러싼 우리의 삶과 요구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안내서는 다양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역사와 목소리를 전달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서 외쳐왔다고 주장합니다.

## 혼인평등, 함께 하면 이를 수 있어요

---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엽니다.

혼인평등은 오픈리로 사는 몇몇의 퀴어가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 국회에서 의원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변화가 누적되고 응집되어 한 순간의 역사적 진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들리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환영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 오드리 로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2. 21.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고,

5. 31.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 25. 발표된 한국갤럽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 시민의 40%가  
동성혼 법제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내서와 함께 변화를 만드는 길에 동참해주세요. 투쟁!

## 질문 1 혼인평등은 무엇인가요

혼인평등은 국가의 제도이자 개인의 권리인 혼인을 이성 간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제한없이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이성 간에만 법률혼을 허용하고, 사실혼 역시 이성 간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결혼의 당사자인 두 사람의 성별을 법률상의 성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별정체성이 다른 두 사람이라도 법적 성별이 동성이라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가령 법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트랜스젠더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인 성별을 정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은, 내 성별정체성도, 상대방의 성별도, 법률상의 성별과도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담아 더 널리 알려진 '동성혼 법제화'라는 단어와 함께 혼인평등(Marriage Equali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혼인평등이 실현되면, 그러니까 동성혼이 가능해지면 원하는 두 사람은 성별과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별이 같은 두 사람도 부모로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 왜 혼인평등이 필요한가요

혼인평등을 바라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기록상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레즈비언, 게이 부부의 결혼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부록 3. 혼인평등 운동의 역사 참조).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목소리는 훨씬 오래 전부터 존재했겠죠.

혼인평등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성 간에만 법률혼이 가능한 현재의 혼인제도로 인하여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부부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고 서로를 돌보고 일상 및 사회적으로도 그 관계를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저 친한 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성부부와 달리 동성부부는 주거, 연금 등 사회보장에서 배제당하고, 배우자가 아플 때 가족으로서 의료정보를 공유받거나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 시, 동성 배우자는 법률 상의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생전에 함께 형성해 온 재산에 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배우자에게 유증을 할 수는 있지만 까다로운 유언 작성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적 상속인의 유류분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2013년에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여성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명이 암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 명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병도 할 수 없었고,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께 살아온 주거를 빼앗기고 고소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 유족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주택 임대차 승계, 세액공제 등 세금, 주거, 사회보장 등 각종 제도에서 동성 배우자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법률혼만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 역시 보호하지만, 현재 법원의 해석상

## 질문 2 : 왜 혼인평등이 필요한가요

---

동성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로도 인정되지 못합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여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른 제도의 경우는 아직 유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 동성부부 중에도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갖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이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 등을 통해 자녀를 낳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비혼출산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의료계의 지침과 관행이 실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데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출산을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공동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한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도 동성부부임을 밝히면 입양기관에서 거부당하기도 하며, 우회적으로 홀로 입양을 하려해도 엄격한 조건으로 인하여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 최근에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외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동성혼이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기에, 이들은 역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 동성부부의 경우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아왔으나 한국에서는 배우자와 남남으로 살아야 하는 한 영국인 남성이 낸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민법상 혼인 및 부부 정의를 개정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편 혼인평등은 가족법을 평등하게 만드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1960년 민법이 제정되었을 때만 해도 여자는 이혼 후 6개월 간 재혼을 못하거나, 남자보다 상속도 절반만 받는 등 성차별적인 조항 투성이었습니다. 남자만 승계하는 호주제나 서로 사랑함에도 먼 조상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조항도 있었지요. 이러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항들은 수십 년 간 평등을 외치는 시민들에 의해 바뀌어 왔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혼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혼인평등은 그렇게 이어져 온 가족법 평등운동의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질문 2 : 왜 혼인평등이 필요한가요

---

이처럼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를 부정하는 법과 제도, 관행 앞에서 동성부부는 수많은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연금의 수령, 임차인 권리의 승계 등 구체적인 재산상 불이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관계가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존엄성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법 앞에 차별없이 관계를 인정받을 권리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애중심적이고 성별이분법적인 혼인제도로 인한 차별의 해소, 함께 둘보며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공적인 인정.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당연히 이루어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혼인평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 질문 3

###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는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여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슬로건의 앞부분인 “모두의 결혼”은 가족법 상 혼인과 관련한 조항의 성중립적인 해석 또는 조항의 개정을 통해 한국의 결혼제도가 여기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배우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제도에 진입할 수 없는 현재의 법제도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결혼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결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모두의 결혼”은 다양한 국가의 혼인평등운동에서 널리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혼인평등 운동에서도 “Marriage for All - 結婚の自由をすべての人に (모두의 결혼 –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라는 슬로건으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Ehe für alle (모두의 결혼)”라는 문구는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결혼할 권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슬로건의 뒷부분인 “사랑이 이길 때까지”는 온라인에서 널리 알려진 해시태그 #LoveWins를 변형하여, 한국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결혼할 권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의미하는 동시에 혐오와 배제, 차별과 불평등의 대척점에 있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혐오와 배제, 차별과 불평등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 주변의 누군가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길 때까지 더 많은 이들과 혼인평등을 향한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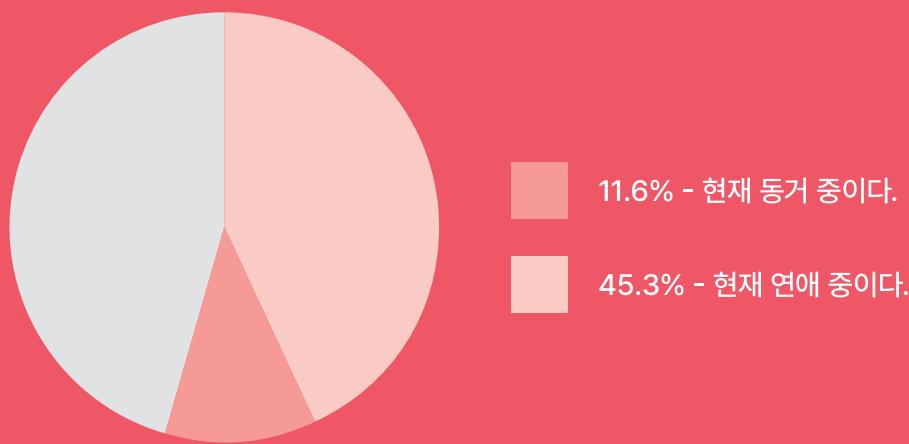
#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

## 혼인평등을 바라는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욕구

이미 많은 한국 성소수자는 혼인평등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 또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로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혼인·가족과 관련한 한국 성소수자의 정치적 욕구와 삶의 현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4년 성소수자 3,1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sup>1)</sup>에서 응답자 중 45.3%가 현재 연애 중이었고, 조사에 참여한 성소수자 대략 10명 중 1명(11.6%)은 애인·파트너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거 중인 이들의 1/3 이상(33.8%)이 애인·파트너와 5년 이상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성소수자(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sup>2)</sup>에서는 애인·파트너와 동거 중인 이들이 7.1%로 참여자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비율의 청년 성소수자들이 애인·파트너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음을

1) 나영정 외, 2014, 『한국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보고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 정성조 외, 2022, 『"나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 혼인평등을 바라는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욕구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애인·파트너와 동거하는 모든 성소수자가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뿐 이미 자신들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조사 (성소수자 3,159명)	2021년 조사 (청년 성소수자 3,911명)		
1순위	차별금지법 제정	53.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60.3%
2순위	동성커플 법적 결혼 인정	45.5%	동성커플 법적 결혼 인정	42.5%
3순위	LGBTI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정 마련	38.6%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	38.0%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혼인평등 실현에 대한 높은 정치적 욕구를 드러내 왔습니다. 2014년과<sup>3)</sup> 2021년 조사<sup>4)</sup> 각각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소수자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고, 그 다음이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2014년 45.5%, 2021년 42.5%)"이었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는 3순위의 응답도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38.0%)"으로 혼인·가족과 관련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특히 혼인평등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집단은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레즈비언은 2021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 1순위로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59.6%)'을 꼽았고, 2014년 조사에서도 다른 정체성 그룹들에 비해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을 원한다는 응답(51.5%)이 높았습니다.

3) 나영정 외, 위의 조사.

4) 정성조 외, 위의 조사.

## 질문 4

# 혼인평등은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모든 성소수자의 삶을 바꾸어 내는 혼인평등

'동성혼'이라는 용어는 마치 이것이 동성애자만의 문제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아닌 다양한 정체성의 성소수자와는 무관한 의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평등'이라는 말처럼 동성혼 법제화는 성별과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특정 개인, 집단의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혼인평등의 실현은 모든 성소수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우선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이 관계를 인정받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죠. 또한 혼인평등은 성별이분법적인 용어의 의미를 바꾸어냅니다. 2012년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의 정의를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성중립적으로 바꾸었다가, 극우개신교계의 반대로 이를 다시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혼인평등이 실현되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부부', '배우자', '부모' 등 가족과 관련한 용어 역시 사전에는 성별이분법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것이 한편으로 민법상 동성혼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혼인평등은 성별이분법적 용어를 바꾸고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도 혼인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혼인 중인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09스117 결정). 혼인 중에 한 쪽이 성별을 바꿀 경우 '외관상' 동성혼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한국의 대법원은 아직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성별정정에 '생식능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이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별을 변경한 후에 아이를 낳을 경우 부모자녀

#### 질문 4 : 혼인평등은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질서가 무너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주장이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혼인평등의 실현은 또한 국가가 공적으로 성소수자를, 동성부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자긍심을 부여해 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안겨줍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성혼을 법제화한 1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이후 전체 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당 1.191명 줄어들었으며, 이는 법제화 당시 청소년 자살률과 비교했을 때 17.9%포인트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에도 혼인평등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sup>5)</sup>

#### 혼인평등이 만드는 사회 인식의 변화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가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내기도 합니다. 혼인평등의 실현은 동성혼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혼인평등을 실현한 대만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혼인평등이 어떻게 대만 사회를 바꿔왔는가”를 보여줍니다.<sup>6)</sup> 2019년 특별법으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이후 4년 동안 대만 시민들의 동성혼에 대한 지지도는 통과 전 37.4%에서 62.6%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성소수자 존중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는 2020년 53.0%에서 2022 73.5%로 20.5%포인트 증가했으며,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공무원, 의원, 교사, 직장동료 등 모든 영역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중 성소수자인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도 2021년에는 36.7%이던 것이 2022년 40.8%로

5) 이해민,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혼인평등’”, 시민건강연구소, 2023. 4. 13.

6) Chu, Y-C., Teng, C-Y., & Lu, J. (2022). A Panel Study: How Marriage Equality Has Changed the Taiwanese Society. Taiwan Equality Campaign.

#### 질문 4 : 혼인평등은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혼인평등 실현은 성소수자만이 아닌 모든 시민을 바꾸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서 선언함으로써, 성소수자가 당신의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입니다”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중 김용민 발언)



## 질문 5 결혼을 안하는 사람에게 혼인평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가적 제도로 제한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해왔습니다. 권리의 박탈은 한 사람의 생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가상의 레즈비언 한 명을 떠올려 볼까요. 십 대 시절,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난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정을 꾸린다는 건 너무 멋진 일 이야”

“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 할거야. 시월드 탈출!”

친구들의 대화 속에 끼지 못한 채 생각합니다. ‘결혼? 나는 애초에 할 수 없을 텐데...’

십 대를 지나 이십 대, 삼십 대가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변인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기를 선언할 때 그녀에게 결혼은 할 수 없는 것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가 꼭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것도 꼭 이미 결혼한 사람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 이상으로 이 사회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인받는 일입니다.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의 결혼제도는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는

## 질문 5: 결혼을 안하는 사람에게 혼인평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것과 제도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된다 하여도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성소수자의 삶은 계속해서 취약한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성부부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설계하며 미래를 그릴 때 동성부부들은 '사고'에 대비하며 불안을 느낍니다. 이성부부들이 당연히 서로를 보호자로 지칭할 때 동성 부부들은 보호자의 자격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괜찮은 걸까요.

혼인평등은 평등의 관점에서 그동안 성소수자에게 제한되어 왔던 결혼할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제도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성소수자가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 혼인평등 운동은 기존 가족/결혼 제도의 모순에 균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결혼 제도는 성별이분법적/이성애중심적/가부장적 요소들의 결정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현 제도는 무수히 많은 모순과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혼이 과연 그러한 관념을 강화하게 될까요? 혼인평등은 결코 기존 제도에 그대로 편입되는 방식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성별이분법, 이성애중심적 구조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핵심요소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혼인평등 실현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해온 반동성애 세력들이 외치는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라는 구호는 역설적으로 동성혼 법제화가 결혼을 통한 정상 시민으로서의 시민권 획득이 아닌, 기존 가족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성애 중심의 혼인제도에 균열을 내는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혼인평등 운동은 분명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단지 '결혼'이라는 좁은 목표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혼인평등 운동은 현행 제도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성별이분법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구조임을 드러내고, 제한된 시민권을 확장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때문에 혼인평등 운동의 과정은 기존 제도에 질문을 던지면서 차별적인 질서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 질문 5: 결혼을 안하는 사람에게 혼인평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직장 내 경조사 휴가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 시댁은 5일, 친정은 3일의 휴가를 지원합니다. 동성부부라면 어떨까요? 어느 쪽이 시댁이고 친정인가요? 또 다른 예로 동성부부의 자녀는 어느 쪽의 성을 따르게 될까요?

성별이분법과 성차별을 공고하게 했던 문화적 요소들(e.g. 성혼선언문, 결혼식 입장 관례, 주례에 사용되는 말들, 마치 가족과 가족의 결합인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들)은 전혀 새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문화에 질문함으로써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하는 범주, 내용, 의무와 권리까지도 새롭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여야 합니다.

한편, 결혼은 오랫동안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완결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결혼을 완결로 받아들이는 문화에서부터 결혼과 가족 제도의 많은 문제가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은 단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결혼 역시 누구에게나 열린 선택 중 하나로서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인평등이 곧 기존의 결혼이나 가족제도에 대한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운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을 발견하고, 이에 맞서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혼인평등 운동은 이처럼 평등을 구체화하는 여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소수자에게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존 질서의 본질과 모순을 더 잘 발견하고 이에 대항하며 모두의 평등을 위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질문 6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제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제도는 서로의 대안이거나 대체관계가 아닙니다.

종종 생활동반자제도를 혼인평등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거나, 혼인평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간의 결혼을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그대로 두고, 다른 대안적 제도만을 추가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차별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자칫 부정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구성하는지에 따라 혼인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동성커플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2017년 동성혼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동성커플은 결혼할 수 없었고 2001년에 제정된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법」에 따라 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즉, 독일은 이성커플은 결혼제도, 동성커플은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로 구분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에서의 권리는 2001년 제정될 때 결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였으나, 2004년에 개정하면서 점차 법률혼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성 커플에게는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제도였으므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동성커플에게도 혼인을 개방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 끝에 2017년 동성커플도 혼인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생활동반자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sup>7)</sup>

한편,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동성 또는 이성에 상관없이 PACS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성커플은 혼인제도나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p.240

## 질문 6 :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제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PAC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동성커플은 PACS만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PACS의 보호 범위가 법률혼에 완전히 이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성소수자 운동단체들은 이러한 차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도 2013년 동성혼이 제도화 되면서, 지금은 동성커플들도 혼인제도 또는 PACS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평등의 관점에서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제도는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활동반자제도는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입니다. 혼인에 비해 간소하기 때문에 쉽게 제도에 진입할 수 있고 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면 그만큼 생활동반자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관계들이 협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는 사회보장이나 재산권에 한정됩니다. 혼인에 비해 가볍고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성 동거커플이나 서로를 돌보며 삶을 함께하는 친구 등의 비혈연 관계는 물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해외 입법례의 경험을 보면, 혼인제도가 여전히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입된 생활동반자제도는, 동성커플을 여전히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합니다. 이성커플에게는 혼인과 생활동반자 제도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지만, 동성커플은 오직 생활동반자 제도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차별이니까요.

따라서, 결혼에 대한 대안적 제도로서 생활동반자법이 의미가 있으려면, 현재 결혼과 PACS가 병존하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동성 또는 이성 간에 상관없이 결혼제도와 생활동반자관계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 한국에서도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의 '가족구성권 3법'이 공동발의되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결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결혼이 아닌 다양한 관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 혼인평등을 바라는 퀴어들의 이야기

'지금 여기, 우리에게는 혼인평등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바깥에서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퀴어가족 스토리

사랑하는 것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났잖아요. 서로 보고 웃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 이경과 하나 커플 스토리



▲ 전체 영상 보기

## 혼인평등을 바라는 퀴어들의 이야기

---

스무 살 무렵,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평범한 삶을 꿈꿨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게 된 건 자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 승정과 정남 커플 스토리



▲ 전체 영상 보기



함께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퀴어가족을 응원합니다.  
더 많은 퀴어가족의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모두의결혼 #사랑이이길때까지 #혼인평등

## 질문 7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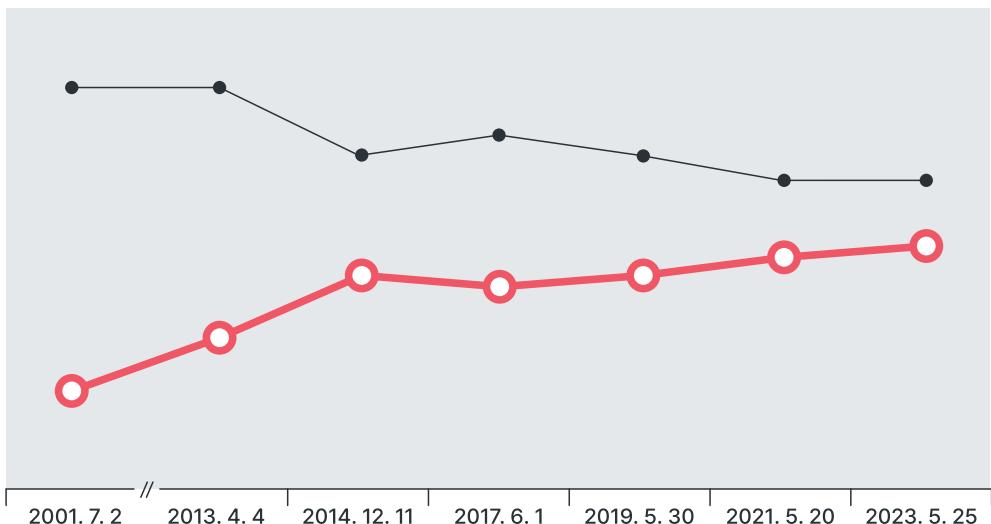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 시민들은 동성커플에게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Ipsos)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54%의 한국 시민들이 동성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36%는 동성혼 법제화를 찬성했습니다.<sup>8)</sup> 혼인평등을 지지하는 여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 시민의 40%가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9)</sup> 한국 갤럽이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찬성이 40%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특히 2021년 조사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의 찬성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 중장년층에서 동성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떠올려볼 때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찬반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찬반 격차는 2019년까지 20%포인트를 넘었으나 2021년 14%포인트, 2023년 11%포인트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sup>9)</sup> 가까운 미래에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시민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Ipsos, "LGBT+ Pride 2021 Global Survey: A 27-country Ipsos survey", 2021. 5. 7.

22 9)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4호(2023년 5월 4주) - 정당별 호감도, 동성결혼 법제화, 동성애 관련 인식 (5월 통합 포함)", 2023. 5. 25.

## 질문 7 :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 ●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2001~2023



- 2013년 4월 뉴질랜드, 이후 프랑스, 미국 여러 주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이뤄져 화제
- 2017년 5월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적 허용. 2019년 대만 첫 법적 동성부부 탄생
- 2023년 2월 한국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
- 유권자 연령 하향으로 2001년의 20대는 만 20~29세, 2013~2019년은 19~29세, 2012년부터 18~29세
- 2001년 '50대'는 50대 이상 전체, 2013~2021년 '60대'는 60대 이상 전체, 2022년부터 60대와 70대 이상 구분
- 조사 종료일 기준 제시. 2001년은 유권자 1,520명 면접조사, 2013년 이후는 약 1,000명 전화조사(CATI)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4호 [www.gallup.co.kr](http://www.gallup.co.kr)

성소수자 커뮤니티도 이미 혼인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앞의 혼인평등을 바라는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욕구 참조).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동성부부가 20쌍 있습니다.<sup>10)</sup>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혼인신고가 거부될 것임을 알면서도 서류를 갖춰 관공서를 찾아간 것입니다. 법 앞에서 자신의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단지 서류상의 거부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존엄과 평등의 문제임을 당당히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10) 경향신문, "동성부부 혼인신고 20건 접수…국가 통계에선 성소수자 지워졌다", 2023. 10. 12.

## 질문 7 :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

민간영역에서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부부를 인정하고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케아코리아는 동성혼을 지지하고 동성부부에 대해 동등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사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처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가 처우규정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동성 배우자까지 확장해 적용하고 있으며, 금속노조는 성소수자 노동자의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단체협약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살고 있는 동성커플들이 자신을 드러내며 개선을 요구했기에 만들어진 변화들입니다. 변화는 이미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기상조'란 말에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혼인평등을 향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당당하게 사회의 변화에 비해 제도의 변화가 '이미 늦었음'을 이야기하고, 의무를 방기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한국에는 이미 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있음을 주장합시다. 혼인평등의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그들의 비겁한 의무 방기일 뿐입니다.

## 질문 8

# 혼인평등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미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존엄과 평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재의 제도적 관행이 헌법 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인 이유입니다.

### 헌법은 혼인에 있어 존엄과 평등을 보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sup>11)</sup>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이처럼 혼인과 가족생활이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자기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혼인과 가족제도가 성평등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별과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혼인 여부와 혼인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조항이 ‘양성의 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은 남녀, 즉 양성의 결합만이 인정되고 동성혼 법제화는 헌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11)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13 결정

## 질문 8 : 혼인평등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

그러나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일본 헌법 제24조는 한국 헌법 제36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일본 4개 지방재판소에서 동성혼 불인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특히 나고야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의 불인정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4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제24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은 혼인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개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민주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최근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sup>12)</sup>

따라서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한 존엄과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혼인이 가져오는 사회보장, 세금, 상속 등 공법적인 효과들을 보았을 때 법원의 판결대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동성부부만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은 정당화될 여지가 없으니까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12)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질문 9

# 개별 법률의 개정으로 동성부부의 제도적 차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은 서로의 배우자라는 법적인 지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권리, 혜택, 의무를 부여하며, 때로는 이로 인한 불이익도 수반하는 법적 및 사회적 제도입니다. 물론 결혼과 관련한 권리, 혜택, 의무의 종류와 개수는 국가와 문화적 규범에 따라 꽤 다르며, 어떤 것은 결혼과 분리되는 것이 적절하기도 합니다. 법적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사법상 재산적 효과: 한 사람의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가, 관계해소시에 위자료에 대한 법적용, 관계해소시의 재산분할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
- 공법상 긍정적 재산 효과: 낮은 재산세, 낮은 소득세, 건강보험 혜택,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더 높은 사회보장 혜택, 고령연금, 유족연금, 상속세 없음
- 공법상 부정적 재산 효과: 더 높은 재산세를 내는 경우,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더 낮은 사회보장 혜택, 고령연금
- 친권/자녀양육: 여성배우자의 출산시 이성커플인 경우 모두 법적 부모가 되는가. 입양시 공동입양 가능한가.
- 그 외 법률적 효과: 출입국과 비자, 증언거부권, 가정폭력보호, 의료결정, 임대차 승계 등

## 질문 9 : 개별 법률의 개정으로 동성부부의 제도적 차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

이 중 어떤 것은 혼인제도와 분리되어서 보장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 법률 개정이나 개인화된 법률문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간단한 신고로 통합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결혼에 비해 각 제도마다 법률적인 문서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는 사법과 행정적 절차를 낯설어하거나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공적인 승인을 하고, 배우자라는 가족 관계 내에서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결혼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모두를 위한 평등한 결혼 밖에 없습니다.

## 혐오를 퍼뜨리는 이들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성혼이 통과되면 사회가 무너진다!”

다들 한번쯤 이런 구호나 피켓을 접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주된 주장은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지금의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와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극우개신교 단체 등 조직적으로 혐오와 선동을 퍼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된 신념을 갖고 움직이기에 설득이 거의 불가능하며, 마주한 자리에서 이들을 설득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퍼뜨리는 허위, 왜곡 정보 중에 바로 정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 이들이 퍼뜨리는 거의 모든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여 있지 않고 오랜 연구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일부 실제 통계 등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더라도 혐오선동의 목적을 가지고 왜곡시켜 퍼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우리의 주장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 혼인평등이 필요한지, 나는 왜 혼인평등을 바라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 함께 하는 이들이 있다면 혐오 선동의 현장에서 ‘대항적 말하기(counterspeech)’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항적 말하기는 혐오선동세력이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맞서는 말하기입니다. 혐오표현이 기대고 있는 권위와 토대를 무력화시키고, 혐오에 대항하는 목소리들을 공론장에서 드러내게 해줍니다. 대항적 말하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단촬영을 시도하는 혐오 선동세력으로부터 옆사람의 얼굴을 피켓으로 가려주는 일, 괜찮냐는 말 한 마디를 건네는 것도 대항적 말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혐오를 퍼뜨리는 이들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자 며느리면 어떻고 여자 사위면 어떻습니까. 어서 이 가족구성권 3법이 어서 통과되어서 남자 며느리든 여자 사위든, 그저 가족으로서 온전히 환대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중 하늘 발언

혐오선동을 홀로 마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잠시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피를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오의 문제는 개인 혹은 몇몇 사람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수 있고 이는 개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안전임을, 함께 살아가며 끈질기게,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 질문 10 앞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한국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동성 간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제도적 차별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동성 간 혼인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거나, 사법적 절차를 통해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적 차별이 위헌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법원, 행정기관이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함께 요구하는 동료 시민들의 더 큰 지지가 필요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목소리를 모아내며 한국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평등과 존엄을 향한 여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변화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세요.

**‘모두의 결혼’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구독하고,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모두의 결혼’은 대중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사회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모두의 결혼’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구독하고, 앞으로 진행될 캠페인과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주변의 동료와 친구들에게도 ‘모두의 결혼’ 캠페인 소식을 전해주세요.

**‘모두의 결혼’이 진행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행사에 참여해주세요**

‘모두의 결혼’은 혼인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정에서 국회와 사법부를 변화시키고 동료 시민의 지지를 모아내고자 서명운동과 의견 남기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질문 10 : 앞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시민사회에서 혼인평등과 성소수자의 혼인·가족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동성혼이 아직 법제화 되지 않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역량을 증진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혼인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만날 것입니다. 이러한 캠페인과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 더 많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혼인평등 실현을 바라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혼인평등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왜 혼인평등의 실현을 바라는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당신이 왜 어떤 계기와 경험을 통해 혼인평등의 실현을 바라고 지지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삶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경험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과 매체를 통해 이야기 나눠주세요.

### 모두의 결혼에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혼인평등을 앞당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혼인평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중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법원과 국회, 정부가 혼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운동과 소송 등 여러 방식의 활동이 펼쳐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만나고, 연결해 나가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 혼인평등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신한은행 140-014-194691 (혼인평등연대)**



#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

[서명 캠페인]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혼인평등법, 함께 만들어요

##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혼인평등법, 함께 만들어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혼인평등법에 대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요구하는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한국의 혼인평등을 앞당깁니다!



### ▲ 서명 참여하기

이 서명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 2024년 3월 31일까지 모인 서명은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전달됩니다.
- 2024년 5월 30일까지 모인 서명은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됩니다.

## [부록1]

### 세계 동성혼 법제화 지도 (2023년 12월 1일 기준)



- 2023년 12월 1일 현재 총 35개 국가에서 혼인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몰타,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 최초로 혼인평등을 달성한 국가는 네덜란드(2001),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는 에스토니아(2024. 1. 1. 시행)입니다. 모든 대륙에 혼인평등이 이루어진 국가들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대만(2019)이 최초입니다. 현재 일본과 태국, 인도, 네팔,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혼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부록2] 국제사회 권고, UN의 입장

### 국제인권규범과 혼인평등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지금의 국제인권조약들의 원형이 되는 문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1조)와 같이 권리의 주체를 ‘모든 사람’, ‘누구나’처럼 성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를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채택 당시 혼인에 있어 여성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라고 표기한 것일 뿐, 혼인을 이성 간의 관계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여러 국제인권기구는 각 국가에게 동성혼을 법제화하거나 동성부부가 겪는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00년 동성배우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거부한 호주의 법률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sup>13)</sup> 또한 유럽평의회는 2018년 9월 21일 결의안을 채택하여,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동성혼에 대해 공통된 접근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sup>14)</sup>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제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동성부부의 차별해소, 동성혼 법제화를 권고해 왔습니다. 주요 권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_유엔 사회권위원회(E/C.12/KOR/4)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13) Young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941/2000, U.N. Doc. CCPR/C/78/D/941/2000 (2003)

36 14)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Private and family life: achieving equality regardless of sexual orientation, Doc. 14620 | 21 September 2018

**2023년\_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 “동성혼 법제화 및 동성부부에게 사실혼 이성부부에 준하는 권리 보장” (뉴질랜드)
- “동성혼을 법제화할 것” (미국)
- “동성혼 법제화 및 동성부부 입양 허용” (아이슬란드)

**2023년\_유엔 자유권위원회(CCCPR/C/KOR/CO/5)**

- “민법 개정 또는 시민 결합 도입 등 동성 커플과 그 자녀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 [부록3] 혼인평등 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동성혼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떠올리는 것이 2014년 김조광수 – 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소송일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평등을 위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응답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국내 혼인평등을 위한 여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을 소개합니다.

- 2002. 12. 17. '여성동아'에서 레즈비언 부부의 결혼식 소개
- 2004. 3. 8. 게이 부부 결혼식이 '국내 첫 동성 공개 결혼식'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됨
- 2004. 7. 23. 인천지방법원이 동성부부가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동성 간에는 사실혼이 인정될 수 없다"며 기각함
- 2006. 9. 23.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토론회>
- 2013. 9. 7. 김조광수 – 김승환 부부 '당연한 결혼식'
- 2013. 12. 10.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현 혼인평등연대) 발족
- 2014. 5. 21. 김조광수 –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 제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1842. 이후 2016. 5. 25. 1심 각하, 2016. 12. 2심 항고 기각)

### [부록3] 혼인평등 운동의 역사

---

- 2017. 7. 11. 직장 내 “성소수자 가족” 친화적 정책 만들기 협약식
- 2019. 6. 동거 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차별 실태조사 진행
- 2019. 11. 23.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1,056명 국가인권위 집단진정, 이후 국가인권위가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2021. 2. 18.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구하는 소 제기
- 2021. 9. 7. 동성부부를 포함 다양한 사회적 가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발의(권수정 시의원 외 24인)
- 2023. 2. 21.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불인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판결, 2023년 6월 현재 상고심 진행 중)
- 2023. 5. 31. 한국 최초로 제21대 국회에서 동성혼을 명시하는 「혼인평등법」 (민법 개정안) 발의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의 ‘가족구성권 3법’ 동시 발의)

## 가족구성권 3법 개요

### ■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

### ■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혼인, 혈연, 입양 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여 혼인 중이 아닌 성인 2명이 가족으로서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두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모두의 결혼

발행일 : 2023. 12. 1

발행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X 혼인평등연대

공동집필 : 길벗, 민희, 성조, 수진, 종걸, 지오, 한희, 호림

디자인 : 소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트위터 @marriage\_all\_kr

페이스북 @marriageforall.kr

인스타그램 @marriageforall.kr